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연구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선 필

2012년 8월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연구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염 미 경

김 선 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김선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목 차

국문초록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
II. 이론적 배경	5
1. 인권과 인권교육	5
2. 인권감수성	15
3.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의 관계	23
III. 연구 설계	25
1. 연구 문제	25
2. 연구 방법	25
IV. 연구 결과 및 논의	32
1. 인권감수성	32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36
3. 인권항목별 인권감수성	40
4. 소결	72
V. 결론 및 제언	76
1. 요약 및 결론	76
2. 제언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5
부록	88

표 목 차

<표 1> 인권항목	6
<표 2> 인권교육의 세 영역	12
<표 3> 인권감수성의 세 영역	16
<표 4> 인권감수성 검사를 위해 선정된 에피소드의 연령별 분류	18
<표 5> 고등학생 대상 인권감수성 검사 설문지의 구성내용	19
<표 6> 선행연구에 나타난 연구 대상들의 인권감수성	20
<표 7>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의 세 영역	24
<표 8>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8
<표 9> 인권교육 경험	29
<표 10> 고등학생 대상 인권감수성 검사에 포함된 인권 항목 및 에피소드	29
<표 11> 연구의 분석틀	31
<표 12>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32
<표 13>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35
<표 14> 계열과 인권감수성(1)	36
<표 15> 계열과 인권감수성(2)	36
<표 16> 성별과 인권감수성(1)	37
<표 17> 성별과 인권감수성(2)	37
<표 18> 성적과 인권감수성(1)	38
<표 19> 성적과 인권감수성(2)	39
<표 20>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감수성	39
<표 21> 각 인권항목(에피소드)에 따른 인권감수성	41
<표 22>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43
<표 23> 학생특성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44
<표 24> 학생특성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45
<표 25>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46
<표 26> 학생특성별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47

<표 27> 학생특성별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48
<표 28>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49
<표 29> 학생특성별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50
<표 30> 학생특성별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51
<표 31>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52
<표 32> 학생특성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53
<표 33> 학생특성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54
<표 34> 사생활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55
<표 35> 학생특성별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56
<표 36> 학생특성별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57
<표 37> 청소년 노동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58
<표 38> 학생특성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59
<표 39> 학생특성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60
<표 40>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61
<표 41> 학생특성별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62
<표 42> 학생특성별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63
<표 43> 환경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64
<표 44> 학생특성별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65
<표 45>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67
<표 46> 학생특성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68
<표 47> 학생특성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69
<표 48>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70
<표 49> 학생특성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71
<표 50> 학생특성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72

그림 목차

[그림 1]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	16
--------------------------	----

부록 목차

<부록 1> 국제인권조약	88
<부록 2> 인권항목 분류표	89
<부록 3> 설문지	91

<국문초록>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연구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김 선 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염 미 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선행연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인권항목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5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응답한 188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구성하고, 이에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현민(2003)과 박봉규(2007), 김도환(2008), 김지호(2011), 국가인권위원회(2002), 조윤정(2006) 등의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인권감수성의 변인에 대한 질문과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KO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책임지각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선행연구들의 인권감수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학생보다는 하위권 학생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인권항목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학생 자신과 관련된 인권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인권감수성을, 무관한 인권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책임지각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인권의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문계 학생과 남학생,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인권항목에 대하여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귀포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교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평가 도구의 개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의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의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인간 삶의 핵심적 목표이며,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삶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개념화되어 인권이 탄생하였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며, 행복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녹아 있다. 이러한 인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이삼열, 2004). 인권은 신앙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종 간의 평등, 선거권과 참정권, 아동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 및 이외의 수많은 이름들로 존재하였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을 점차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개념의 형성과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인권이 포괄하는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행복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더욱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즉, 인권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되어 온 것이며, 그것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든 퇴보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인권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인권교육이 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은 인권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교육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은 학교이다(구수경, 2007).¹⁾ 인권은 사회화를 담당하는 학교를 통해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화된 시민이 배출될 때, 우리 사회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장(場)이 되어야 할 학교가 반인권적 사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일명 ‘오장풍 교사’²⁾로 대표되는 교사

1) 학교가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게 되는 과정은 구수경(2007)의 연구를 참조할 것.

들의 무리한 학생 체벌,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도를 넘은 무례한 행동³⁾,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사건⁴⁾ 등은 학교가 과연 인권을 교육하는 곳이 맞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학교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학교가 더 이상 자정능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인권이 유린되는 현재의 학교 풍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교육의 강화를 통해 무너진 학교 내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인권을 체득한 시민을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학교 고유의 정체성을 되찾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권의식⁵⁾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김도환, 2008; 박봉규, 2007; 심태진, 2011; 이승미, 1999; Getz, 1985). 이들은 주로 인권관련 문서를 토대로 설문을 구성하여 해당 연구 대상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통해 인권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양자를 포괄하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그것을 인권교육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태도, 기능, 행동을 함양시키려는 목표를 지닌 전인적인 활동이다. 인지·정의·행동적 영역 전반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교육활동이 인권교육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교육활동에는 교육목표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가 존재한다. 교육평가를 통해 교육활동이 목표로 하는 것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습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2) 자세한 내용은 노컷뉴스(2010.07.15.), “선생님 너무해요...폭력 교사 영상 공개 파문”을 참조할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527690>).

3)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2012.01.11), “교사들도 ‘피해자’...학생들에 폭언 들어도 속수무책”을 참조할 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387.html).

4)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2011.12.22), “급우가 둔 뺏고 때려 중학생 목숨 끊어”를 참조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22157135&code=940202).

5)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이란 인권에 대한 일정한 인식 또는 견해태도 등을 의미한다.

인권교육 또한 교육목표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을 학생들이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⁶⁾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2008)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평가 도구 개발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평가 도구 개발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권교육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상 인권교육 평가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 수준을 검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인권교육 평가와 호환이 가능한 인권의식 검사 도구가 있는지 탐색해보았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수성⁷⁾ 지표 개발 연구’(2002)에 주목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연구를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인권교육의 강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둔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권과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감수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하

6) 이 연구에서의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경찰, 군인,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교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5).

7)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따라서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의 한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II장을 통해 확인해 나갈 것이다.

고, 그 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I 장은 ‘서론’으로서, 인권의 태생적 성격과 학교 내 인권침해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II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본 연구에 필요한 개념들 즉, 인권과 인권교육, 인권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개념 상호 간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III 장은 ‘연구 설계’로서, I · II 장을 통해 제기된 연구 문제를 좀 더 명확히 기술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 대상 및 검사 도구를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특성 및 인권감수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IV 장은 ‘연구 결과 및 논의’로서, III 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및 학생 특성과 인권감수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V 장은 IV 장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과 인권교육

1) 인권

(1)인권의 개념적 이해

인권(Human rights)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구체성으로 인해 인권 개념을 사용하는 이들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수광, 2002).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 정의된다(김준수, 2004; 라미너, 2008; 심태진, 2011; 오승윤, 20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2000; 허완중 2011). 인권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은 ‘기본적 권리’이다. 인간은 다양한 권리를 누리지만, 모든 권리가 인권은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은 시대나 장소나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갖는 권리이다. 어떤 권리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이 누릴 수 있거나 특정한 후천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된다면, 그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이준일, 2010: 7). 셋째, 인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다. 인권은 ‘기본적 권리’이기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넷째, 인권은 ‘우월적 권리’이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한다. 실정법이 인권을 억압하거나 인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할 경우,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 실정법을 개정·폐기·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 즉 실정법은 인권을 보장할 때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인권은 ‘추상적 권리’이다. 인권은 매우 불명

확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정법적 권리로 성문화되어야 한다(교황청정의평화평의회, 2006: 153-154; 김영란, 2005: 13-14; 오승윤, 2011: 6-7; 허완중, 2011: 140-143).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자 실정법에 우선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권은 실정법적 권리로 성문화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제사회 및 국가는 여러 문서의 형태로 인권의 내용을 성문화시켜왔고⁸⁾, 인권의 내용은 조약 및 법률에 나타난 인권 관련 조항들을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승윤(2011: 25)은 성낙인(2011: 400)이 분류한 것을 토대로 세계인권선언과 A협약·B협약 그리고 헌법을 중심으로 <부록 2>와 같이 인권항목 분류표를 설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참조하여 <표 1>과 같이 인권항목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나타난 각 인권항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 인권항목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1. 평등권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 생명권	2.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3. 노예제도와 강제노동 금지	3. 일할 권리
4. 고문금지	4. 정당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건강과 안전, 휴식,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5. 법 앞에 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5.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6. 법 앞의 평등	6.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8.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8. 정보에 대한 권리
9. 사생활 보호권	9. 발전에 대한 권리
10. 이주의 자유와 망명할 권리	10. 균형 잡힌 환경에 대한 권리
11. 국적에 대한 권리	11. 인류 공동유산을 포함하는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와 접근의 자유
12.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이룰 권리	
13. 재산을 소유할 권리	
1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5. 의견과 표현의 자유	
16. 집회와 결사의 자유	
17. 공무에 참여할 자유	

* 국가인권위원회(2002: 13)

8) 성문화된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은 <부록 1>과 같다. 한편, 인권과 관련한 국내 법률에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으며, 하위법률은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인권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령으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 인권의식 수준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는 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인권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권의식을 다루는 연구들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게츠(Getz, 1985)와 이승미(1999), 국가인권위원회(2005), 김도환(2008), 박봉규(2007), 심태진(2011), 국가인권위원회(2002) 등이 있다.

먼저 게츠(1985)는 인권태도질문지(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Inventory)를 제작하여 인권관련 태도를 검사하였다. 그는 미합중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언론의 자유, 기회의 평등, 생존 및 보건의 권리,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생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권의식이 인지적 요인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5-6).

이어서 인권의식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이승미(1999)는 인권과 관련된 딜레마를 마련하여, 그것을 연구대상자에게 들려주고 면담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05)는 ‘국민인권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인권의식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인권교육의 실태, 청소년의 인권 실태 등을 다루었다. 김도환(2008)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회과 정치교육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덧붙여, 박봉규(2007)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승덕(2004)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과 세계인권선언(1948), 대한민국 헌법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 침해당하기 쉬운 학생인권을 37개로 나누어 설정한 항목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3가지 영역을 추출하여 인권의식 진단척도를 개발하였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을 비교한 연구로는 심태진(2011)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심태진은 인권의 일반적인 내용, 인권교육, 구체적인 인권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의식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연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bility)을 인권에 대한 일련의 심리적 과정으로, 인지·정서·행동적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표 1>을 통해 분류한 인권항목 가운데 한국 상황에 맞는 인권항목을 추려 해당 인권항목과 관련한 딜레마가 담긴 에피소드를 구성하였는데, 각 에피소드에는 인지·정서·행동적 과정을 수렴하는 하위요소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수준을 묻는 질문을 첨부하여 하위요소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틀 구성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었다.

2)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정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는 크게 국제기구들에 의한 정의와 학술적 연구에 의한 정의 그리고 국내법에 의한 정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제기구들에 의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UNESCO, 1974: 1조)는 인권교육을 개인과 사회 집단이 국내 및 국제 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위해 자기의 개인적 능력, 태도, 소질, 적성 및 지식 전반을 의식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든 사회 생활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유엔(UN, 1994: 2조)은 인권 교육을 다음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다음의 목표’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모든 국가·선주민·인종·국가·민족·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관용·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2조)을 말한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1996: 14)는 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발전시키고 인권의 기본적인 원리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만드는 것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학술적 연구들을 통해 이루어진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교(1998)는 인권교육을 인간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을 소유하고 타당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히 고안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구정화·송현정·설규주(2004)는 인권교육을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2007: 18)은 인권교육을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억압과 착취적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주은(2012: 6)은 인권교육을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내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은재 의원 등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발의안(2011.3.13)’ 제2조에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상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을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지식), 인권존중의 태도를 갖추게 하며(가치·태도), 인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키고(기능),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행동) 도와주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인권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면, 인권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태도, 기능, 행동 등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인적 교육이다.⁹⁾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어야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 관련 개념을 다룬다. 즉 인권교육은 인권 지식에 대한 인지적 학습이다. 구정화·송현정·설규주(2004)와 리스터(Lister, 1991)는 인권관련 개념에 대한 교육을 ‘인권에 대한>About) 교육’으로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2011: 25)는 기존 연구(구정화 외, 2007; 문용린 외, 2003)들을 토대로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를 인권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인권교육을 할 때 인권 관련 지식 교육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하라고 권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 심태진(2011: 27)은 인권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교사들이 권위를 내세워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무엇이 인권침해인지도 모른 채 교사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학교 내에서 인권에 관한 갈등이 증폭된다고 보고 인권 지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인권교육은 인권 존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인권 존중의 가치·태도 형성’(2011: 24) 부분을 인권교육의 한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인권 존중의 태도는 인권에 관한 가치를 내면화시킬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인권에 관한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렵다. 그런데 현재의 인권교육은 대부분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이다(구정화·송현정·설규주, 2004; 김민경,

9) 이와 같은 인권교육의 목표는 뱅크스(Banks, 1990)가 사회과의 교육 목표로 제시한 지식, 가치·태도, 기능, 행동의 네 가지 요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권교육과 사회과 교육이 서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7; 김희정, 2005; 박상준, 2003; 박영진, 2006; 오승윤, 2011; 이주은, 2012; 전미숙, 2011). 이들은 학생들에게 인권문제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 인권 관련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구정화·송현정·설규주(2004)와 리스터(Lister, 1991)는 이러한 인권교육을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과 같이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 관련 가치를 내면화하고, 인권 존중의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2011: 254)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 환경이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 친화적 환경을 향한 교육 당국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인권교육은 인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킨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26). 이는 현대 사회에 제기되는 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인권문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1: 254)에 따르면, 7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향후 그들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교육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26). 인권교육은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가치·태도, 기능을 총동원하여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함양하고, 실제 행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활동이다. 이상의 목표와 내용을 토대로, 인권교육을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¹⁰⁾

<표 2> 인권교육의 세 영역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인권에 대한 지식 습득	-인권 존중의 가치·태도 형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함양 및 행동 참여

(3) 인권교육의 평가

교육평가는 교육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 판단하는 활동이다(차경수·모경환, 2008: 337).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에 대한 책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자체를 통해 학생들이 평가 준비를 위한 학습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성태제, 2010: 30-31). 따라서 교육평가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실태를 개선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교육목표가 세워진 의도적 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인권교육 또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 관련 지식, 가치·태도, 기능 및 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인권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수준 평가를 위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¹¹⁾ 이는 인권교육이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여러 교과¹²⁾에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교과 평가에 관한 연

10) 블룸(Bloom, 1956), 크래스웰과 동료들(Krathwohl et al., 1964) 그리고 해로우(Harrow, 1972) 등이 구축한 교육목표 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추구되는 목표들은 대체로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정서적 영역(affective domain), 운동기능적 영역(Psychomotor domain)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성호(2009: 240)는 이러한 분류가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포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성호의 견해를 받아들여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을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세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어떤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시켜야 할지 논하고자 한다.

11) I 장에서 거론한 것처럼 인권교육 평가도구의 개발을 시도한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08)는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학생과는 거리가 있다.

구들은 존재하지만 인권교육 평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인권교육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성태제(2010: 131-132)는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인지적 영역을 평가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의 인권교육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국제 문서들과 국내법 그리고 학술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선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국제 문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1948)은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역시 아동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제29조 1항)을 목표로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으며,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에서는 아예 제3부의 IV장 제목을 ‘인권교육’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IV장의 제1항을 통해 인권교육이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신장과 성취, 상호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법에 제시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우선 최상위법인 헌법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일부 개정 2008. 03. 21) 제2조(교육이념)에는 교육의 목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어, 교육이 근본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임

12) 국가인권위원회(2011: 64)는 인권을 다루는 교과를 분석하기 위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실과/가정·기술, 체육과로 관련 교과를 한정하였다.

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 개정 2012.03. 21)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며(제1조), 이 조직이 '인권에 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9조 5항).

한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학술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인권의식과 학교폭력 간의 상관성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하현(2005)의 연구가 있다. 박하현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학교폭력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처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를 시도한 조현민(2003)은 교사와 학생이 느끼는 학생인권의 보장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두 주체 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심태진(2011) 또한 조현민과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으나, 차이점으로는 인권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를 포함했다는 데 있다. 그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두 주체 모두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거나 단발적인 교육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이근호(2006)와 라미녀(2008)는 '두발규제'와 '학교생활규정'을 연구주제로 삼아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두 주체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김영로(2008)는 연구 결과 학생들의 인권의식 및 인권존중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인권교육이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홍완(2009)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과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홍승수(2010)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에게 적용하였는데, 민주시민의식을 구성하는 5가지 하위덕목 -인간존중의

식, 준법의식, 공동체 의식, 합리적 의사결정, 책임의식- 에서 각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은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인권감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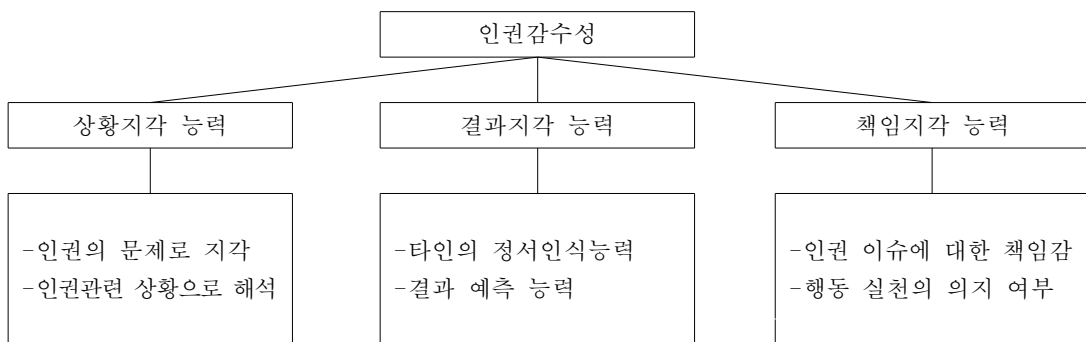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개념으로 ‘인권감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감수성의 개념적 이해 및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를 인권감수성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권감수성의 정의와 구성요소 및 검사 도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권감수성의 정의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즉, 인권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느끼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의지를 갖게 되는 심리적 과정이 인권감수성이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이란 개념에는 심리적 과정인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이주은, 2012: 18). 이는 인권에 대한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과 내용면에서 일치점을 보이는 것이다.

2)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

인권감수성은 크게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 등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상황지각은 인권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해석 능력을 말하며, 결과지각은 어떤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책임지각은 인권에 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를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2: 12)

[그림 1]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

[그림 1]에 의하면, 어떤 상황을 인권 문제로 지각하고 그것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해석하는 상황지각 능력은 인지적 영역으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과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즉 결과지각 능력은 정서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권 이슈에 대한 책임감과 행동 실천의 의지인 책임지각 능력은 행동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인권감수성의 세 영역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따라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구성요소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이주은, 2012: 18).

3)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에 대한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상황에 맞는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2).¹³⁾ 표준화 검사를 거친 인권감수성 검사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를 제시하고¹⁴⁾, 이에 대한 반응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인권감수성 검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의 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딜레마 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인권과 무관한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 중요도를 점수로 매기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인권과 무관한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클 경우에만 인권옹호 문항에 매긴 점수를 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0점을 준다.

인권감수성 검사는 하위요인으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포함하며, 각 하위요소들은 서로 상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요인들로 각 하위요인들이 적절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24). 각 에피소드에는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그리고 책임지각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질문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어 0점에서 15점까지 점수의 범위가 분포하고 있다.

검사 유형은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 및 성인용 총 4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등학생용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 계수가 0.8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25). <표 4>를 보면 고등학생용은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특정 인권 항목을 다루고 있다는

13) 국가인권위원회(2002: 150)는 자신들이 개발한 인권감수성 진단 검사 척도가 개발되기 전에는 인권감수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검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도덕적 행동을 위한 네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도덕민감성'(Rest, 1983, 1986, 1994)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Volker, 1984; Leibowitz, 1990; Mentkowski & Loacker, 1985; McNeel, 1994; Ernest, 1990; Fleck-Henderson, 1994; Lind, 1997; Brabeck et al., 2000; 홍성훈, 2000).

14) 인권감수성 검사에 선정된 에피소드들은 <표 1>에 분류된 인권항목들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로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연명별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14)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인권감수성 검사를 위해 선정된 에피소드의 연령별 분류

에피소드 및 인권 항목	중학생용 (6 이야기)	고등학생용 (10 이야기)	대학생 및 성인용 (10 이야기)
감원 대상(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	◎
김씨의 구속(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	◎	◎
장애인 학교(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	◎	◎
자녀교육(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	
CCTV(사생활권)	◎	◎	
아르바이트(청소년 노동권)	◎	◎	
진료자 명단(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	◎
공장 건립(환경권)		◎	◎
황판사의 고민(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	◎
려씨의 임금(이주노동자의 노동권)		◎	◎
국가 의료정보센터의 설립(사생활권)			◎
의사의 고민(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			◎
가족 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결혼할 권리)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2: 20)

고등학생 대상 검사는 <표 5>와 같이 구성요소별(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로는 총 0점에서 50점, 인권감수성 전체로는 총 0점에서 150점까지 점수가 분포한다. 따라서 인권감수성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면, 전체적인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의 수준 그리고 각 인권 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분석하여 인권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고등학생 대상 인권감수성 검사 설문지의 구성내용

구성요소	문항번호	개수	배점
상황지각	1.1)가, 2.1)가, 3.1)가, 4.1)가, 5.1)가, 6.1)가, 7.1)가, 8.1)가, 9.1)가, 10.1)가.	10	50
무관한 가치	1.1)나, 2.1)나, 3.1)나, 4.1)나, 5.1)나, 6.1)나, 7.1)나, 8.1)나, 9.1)나, 10.1)나.	10	
결과지각	1.2)가, 2.2)가, 3.2)가, 4.2)가, 5.2)가, 6.2)가, 7.2)가, 8.2)가, 9.2)가, 10.2)가.	10	50
무관한 가치	1.2)나, 2.2)나, 3.2)나, 4.2)나, 5.2)나, 6.2)나, 7.2)나, 8.2)나, 9.2)나, 10.2)나.	10	
책임지각	1.3)가, 2.3)가, 3.3)가, 4.3)가, 5.3)가, 6.3)가, 7.3)가, 8.3)가, 9.3)가, 10.3)가.	10	50
무관한 가치	1.3)나, 2.3)나, 3.3)나, 4.3)나, 5.3)나, 6.3)나, 7.3)나, 8.3)나, 9.3)나, 10.3)나.	10	
인권 감수성			150

4) 인권감수성 관련 연구

인권감수성을 연구주제로 삼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조윤정(2006), 김덕진(2009), 이상희(2007), 박재숙(2008), 기순임(201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조윤정(200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인권옹호 경향을 분석하면서 인권감수성이 높은 학생이 인권옹호 경향 역시 높게 나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의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기술향상구조 학습활동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덕진(2009)은 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해당 학습활동을 통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상희(2007)는 중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인권감수성의 향상 정도를 분석하여,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감수성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박재숙(2008)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인권감수성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순임(2011) 역시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연구 대상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표 6>¹⁵⁾과 같다.

<표 6> 선행연구에 나타난 연구 대상들의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대상	연구지역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국가인권위원회 (2002) ¹⁶⁾	초등학생	논산시	인권감수성	1.88
			상황지각	1.86
			결과지각	2.10
			책임지각	1.70
	중학생	논산시	인권감수성	2.46
			상황지각	2.70
			결과지각	2.33
			책임지각	2.34
	고등학생	공주시	인권감수성	2.45
			상황지각	2.60
			결과지각	2.49
			책임지각	2.29
	대학생	대전광역시· 공주시	인권감수성	2.59
			상황지각	2.42
			결과지각	2.71
			책임지각	2.63
성인	서울특별시	인권감수성	2.69	
		상황지각	2.64	
		결과지각	2.71	
		책임지각	2.73	
조윤정(2006)	고등학생	경기도	인권감수성	2.26
			상황지각	-
			결과지각	-
			책임지각	-
김덕진(2009)	초등학생	경상남도 C시	인권감수성	2.60
			상황지각	2.73
			결과지각	2.54
			책임지각	2.54
이상희(2007)	중학생	과천시	인권감수성	3.46
			상황지각	3.38
			결과지각	3.70
			책임지각	3.31
박제숙(2008)	중학생	대구광역시	인권감수성	2.22
			상황지각	2.51
			결과지각	2.04
			책임지각	2.11
기순임(2011)	사회복지 사(성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권감수성	2.45
			상황지각	2.35
			결과지각	2.46
			책임지각	2.52

15) 선행연구들 가운데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전검사 결과만을 기입하였다. 당시 연구 대상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전검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인권감수성 점수를 총점 그대로 기입한 경우, 이를 5점 만점에 대한 점수로 환산하여 기입하였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1.88, 상황지각은 1.86, 결과지각은 2.10, 책임지각은 1.70으로, 중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46, 상황지각은 2.70, 결과지각은 2.33, 책임지각은 2.34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45, 상황지각은 2.60, 결과지각은 2.49, 책임지각은 2.29로,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59, 상황지각은 2.42, 결과지각은 2.71, 책임지각은 2.63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인권감수성은 2.69, 상황지각은 2.64, 결과지각은 2.71, 책임지각은 2.73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조윤정(2006)은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2.2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덕진(2009)은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2.60, 상황지각은 2.73, 결과지각은 2.54, 책임지각은 2.54로 나타났으며, 이상희(2007)는 중학생의 인권감수성이 3.46, 상황지각이 3.38, 결과지각이 3.70, 책임지각이 3.31로 나타났다. 박재숙(2008)은 중학생의 인권감수성이 2.22, 상황지각이 2.51, 결과지각이 2.04, 책임지각이 2.11로 나타났으며, 기순임(2011)은 사회복지사(성인)의 인권감수성이 2.45, 상황지각이 2.35, 결과지각이 2.46, 책임지각이 2.52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권감수성을 검사한 각 연구들은 연구 대상과 연구 년도 그리고 연구 지역이 서로 다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검사한 초등학생과 이상희(2007)가 검사한 중학생의 인권감수성을 제외하고는 연구 대상과 연구 년도, 연구 지역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인권감수성이 보통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검사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5)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정하여, 그 요인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

16)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밝힌 연구 대상별 인권감수성은 각 에피소드에 대한 평균만을 밝혔을 뿐, 연구 대상별 총점에 대한 평균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에피소드에 나타난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각 연구 대상별 전체 평균을 구하였다.

편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출해보고자 한다.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한 논문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조현민(2003)과 박봉규(2007), 김도환(2008), 김지호(2011), 국가인권위원회(2002), 조운정(2006)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조현민(2003: 32-34)은 성별과 학년, 계열(인문계·실업계), 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요인으로 두고, 이 요인에 따른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의 인식 차이와 인권 필요성 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각 요인들은 각 인권항목들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별, 출생순위, 경제수준에 따라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박봉규(2007: 21)가 있다. 박봉규의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으며,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났다(2007: 37-41). 다음으로 김도환(2008: 41-50)은 성별과 정치과목 이수여부, 부모의 소득과 학력을 배경요인으로 두고, 이 요인들에 따른 고등학생의 인권의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치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소득 및 학력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연령, 학력, 근무경력, 설립연도, 입소정원, 인권교육담당유무를 요인으로 두고, 이 요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지호(2011: 59)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근무경력) 중에는 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한 국가인권위원회(2002: 55-56)는 성별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중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감수성이 높다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운정(2009)은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종교, 성적, 사회과 성적, 사회과목 선호도를 요인으로 두고 이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에서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려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에서 분석한 인권의식 관련 요인들 가운데, 학생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요인들로 계열·성별·성적¹⁷⁾, 인권교육 경험을 선정하였고, 이 요인들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의 관계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 개념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밝혀 인권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를 인권감수성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태도, 기능 그리고 행동 즉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의 종합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목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평가 도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권감수성은 인권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느끼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의지를 갖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 즉, 인권감수성은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이주은, 2012: 18). 이처럼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은 <표 7>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일치한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17) 성적은 김지호(2011)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인 학력을 학생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표 7>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의 세 영역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인지적 영역	-인권에 대한 지식 습득	-상황지각
정서적 영역	-인권 존중의 가치·태도 형성	-결과지각
행동적 영역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함양 및 행동 참여	-책임지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의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국가인권위원회, 2002)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수준 곧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것이다. 특히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 특성(계열, 성별, 성적,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의 강화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검사하여, 현재 학생들의 인권교육 수준, 즉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생들의 특성들을 요인으로 두고 이 요인들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은 선행연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인권항목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과정을 밟아나가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능력을 함양해 나간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발달과정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그중 몇몇은 설득력 있는 발달이론체계를 구축해왔다. 에릭슨(Erikson, E.)의 심리사회발달이론과 피아제(Piaget, J.)의 인지발달이론 그리고 프로이트(Freud, S.)의 심리성적발달이론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연문희·강진령, 2006).

인권의식 역시 인간의 성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착안한 이승미

(1999)는 인권의식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의 추론 수준은 전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도구적인 쾌락주의의 1, 2단계의 인권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사회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인권침해의 희생자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연령에 따른 인권의식의 발달 차이가 고등학생을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등학생 시기부터 인권의식이 자신을 넘어 타인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는 고등학생 시기부터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이하 서귀포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일정 지역 고등학생에 한정된 연구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김대운, 2004; 배동욱, 2001; 백동기, 2004; 이향유, 2010; 정영욱, 2009)과 더불어 교육의 지방화 또는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현재, 서귀포시 소재 고등학생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 교육행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¹⁸⁾, 2012년 교육통계는 현재 자료수합중이며, 최종결과는 8월 말경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청 담당자는 2012년 4월까지의 공식 통계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1년도 교육통계연보’¹⁹⁾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관내의 전·입학 숫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2012년도의 학생 수는 2011년 통계에 비추어 유추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의 권고에 따라 ‘2011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확인한 결과, 2011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총 10개 학교이며, 이 학교들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총 5,742명이고 1학년은 2,091명, 2학년은 1,873명, 3학년은 1,778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해가

18) 2012년 4월 10일 담당자와 통화

19) <http://jje.go.kr/index.php/contents/info/statistic/statistic>

지난 2012년도 서귀포시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 수는 대략 2,091명 내외가 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91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 대신 표본추출에 의한 표본조사를 사용하였다. 표본조사를 사용한 이유로는 입시중심의 학교현장에 본 연구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킬 근거가 없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며, 조사비용 및 시간·인원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이경서, 2001: 198).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층화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²⁰⁾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층화추출법에 따라 서귀포시 고등학교를 남학교·여학교·남녀공학으로 나누었다. 서귀포시에 소재한 남학교는 3개, 여학교는 3개, 남녀공학은 4개가 있고, 2011년 현재 1학년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교는 885명, 여학교는 802명, 남녀공학은 404명으로 나타나 앞서 확인한 모집단의 수 2,091명과 동일한 학생 수가 재학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남학교와 여학교는 인문계, 남녀공학은 모두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점이였다.²¹⁾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임의로 모집단의 약 10%인 200명으로 정하고, 남학교·여학교·남녀공학에 비례 할당하여 남학교와 여학교에 각각 2개 학급을, 남녀공학에 4개 학급을 지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정 학교와 학급은 단순임의추출에 따른 난수표를 통해 선정되었다(Earl Babbie, 2002: 257). 이에 따라 남학교는 2개 학교가 선정되어 각 학교당 1개 학급이 배정되었고, 여학교는 1개 학교가 선정되어 2개 학급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남녀공학은 2개 학교가 선정되어 각 학교 당 2개 학급이 배정되었다. 그 결과, 남학교의 경우 총 70명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여학교의 경우 총 75명 그리고 남녀공학의 경우 85명으로 총 230명²²⁾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²³⁾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42명을 제외하고, 총 188명의 답변²⁴⁾을 토대로 본 연구를 실시

20) 층화추출법이란 모집단을 중복되지 않는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각 층으로부터 원하는 표본을 단순임의추출로 추출하는 방법이다(이해용·이필영, 2003: 132).

21) 학급당 학생 수는 남학교·여학교의 경우 약 35명(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1,687명/ 1학년 학급 수 48학급, 남녀공학의 경우 약 10명(전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404명/ 1학년 학급 수 41학급)으로 나타났다.

22) 학교별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남녀공학의 학생 수가 많아진 것은 남녀공학의 각 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발생한 현상이다.

23) 2012년 4월 한 달간 실시.

24)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학생들은 남학교 6명, 여학교 3명, 남녀공학 33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학생들은 남학교 64명, 여학교 72명, 남녀공학 52명이다.

하였다.

2) 검사 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설문지화 하여 사용하였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특성과 인권감수성 검사로 나누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권교육 경험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생이 가진 개인적인 특성으로 계열(인문계·전문계)²⁵⁾, 성별(남자·여자), 성적(상·중·하)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2011)가 실시한 인권교육 실태조사와 조현민(2003)과 김도환(2008)이 사용한 설문조사 문항을 재구성하여 설문지에 첨가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표 8>을 살펴보면, ‘인문계’는 136명(72.3%), ‘전문계’는 52명(27.7%)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05명(55.9%), ‘여학생’이 83명(44.1%)으로 나타났다으며, 성적은 ‘상’이 47명(25%), ‘중’이 108명(57.4%), ‘하’가 33명(17.6%)로 나타났다.

<표 8>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누적비율(%)
계열	인문계	136	72.3	72.3
	전문계	52	27.7	100.0
성별	남자	105	55.9	55.9
	여자	83	44.1	100.0
성적	상	47	25.0	25.0
	중	108	57.4	82.4
	하	33	17.6	100.0

이어서 인권교육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인권교육의 목표달성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인권교육의 실시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요인에 대한 질문은 심태진(2011: 82)

25) 본 연구의 모집단이 남학교·여학교는 인문계, 남녀공학은 전문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식인 남학교·여학교·남녀공학에 따른 학생의 특성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 실시한 설문을 재구성하였다. <표 9>에서 인권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없다’가 29명(15.4%), ‘있다’가 53명(28.2%), ‘모르겠다’가 106명(56.4%)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과반이 넘는 106명(56.4%)이 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추측(심태진, 2011: 53)을 가능하게 한다.

<표 9> 인권교육 경험

구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누적비율(%)
인권교육 경험	없다	29	15.4	15.4
	있다	53	28.2	43.6
	모르겠다	106	56.4	100.0

다음으로 인권감수성 검사를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 가운데 고등학교용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에는 <표 10>과 같이 각기 다른 인권항목이 담긴 에피소드 10개가 제시되어 있다.

<표 10> 고등학생용 인권감수성 검사에 포함된 인권항목 및 에피소드

인권항목	에피소드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감원대상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김씨의 구속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장애인 학교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자녀교육
사생활권	CCTV
청소년 노동권	아르바이트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진료자 명단
환경권	공장 건립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황판사의 고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려씨의 임금

각 인권항목은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사생활권, 청

소년 노동권,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환경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다. 이들은 한국 상황에서 의미 있는 딜레마 가운데, 연령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발달 및 이해도를 고려해 선정된 것들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19-20).

앞서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인권항목에 따른 질문은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그리고 책임지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짝을 맞추어 인권과 무관한 가치를 나타내는 질문을 첨부하였다. 따라서 인권감수성 검사를 통해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그리고 책임지각 각각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쳐 인권감수성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수준을 분석한다고 할 경우에는 인권감수성과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모두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에 나타난 학생의 특성과 인권감수성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12.0KO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즉,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통계²⁶⁾와 One-way ANOVA(일원분산분석, 이하 ANOVA)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자료 분석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표 11>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분석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권감수성과의 비교를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순서 1). 그리고 학생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에 한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순서 2). 다음으로는 각 인권항목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각 인권항목별 인권감수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며, 각 인권항목별로 나타난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권감수성과의 상호 비교를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특성별 각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에 한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순서 3).

26) 본 연구에서 기술통계라 함은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한 평균값만을 분석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표 11> 연구의 분석틀

순서	분석 내용		자료분석 방법	
1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2	학생특성과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계열	ANOVA, 기술통계	
		성별	ANOVA, 기술통계	
		성적	ANOVA, 기술통계	
		인권교육 경험	ANOVA, 기술통계	
3	인권 항목 별 인권 감수성	10개 인권항목 전체 비교		기술통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사생활권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청소년 노동권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환경권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기술통계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ANOVA, 기술통계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서귀포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수준은 <표 12>와 같이 최소값 0.20, 최대값 4.63, 평균 2.29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I장에서 밝힌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이곳에서 재차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인권교육의 강화를 통해 인권감수성 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표 12>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인권감수성	0.20	4.63	2.29
상황지각	0.00	4.50	2.36
결과지각	0.00	5.00	2.40
책임지각	0.00	4.40	2.12

다음으로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상황지각은 최소값 0.00, 최대값 4.50, 평균 2.36, 결과지각은 최소값 0.00, 최대값 5.00, 평균 2.40, 책임지각은 최소값 0.00, 최대값 4.40, 평균 2.12로 나타났다. 각 구성요소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행동적 영역을 다루는 책임지각 점수가 다른 요소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지식 전달 중심의 인권교육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분석하였는데,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참여’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2011: 114). 이는 앞선 연구들이 지적한 지식전달중심의 현 인권교육의 한계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결국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이 교육당국이 세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서적·행동적 영역

에 대한 교육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입시라는 과정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를 인권존중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쉽사리 개선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역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 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비교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연구 대상들의 인권감수성을 비교하면 <표 13>²⁷⁾과 같다.

<표 13>을 보면, 본 연구의 고등학생 인권감수성은 2.29이고,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초등학생 인권감수성은 1.88, 중학생은 2.46, 고등학생은 2.45, 대학생은 2.59, 성인은 2.69로 나타났다. 조윤정(2006)의 고등학생 인권감수성은 2.26, 김덕진(2009)의 초등학생 인권감수성은 2.60, 이상희(2007)의 중학생 인권감수성은 3.46, 박재숙(2008)의 중학생 인권감수성은 2.22, 기순임(2011)의 사회복지사(성인)의 인권감수성은 2.45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초등학생과 이상희(2007)의 중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연구들의 인권감수성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2002)와 조윤정(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2.45와 2.26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2.29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7)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밝힌 연구 대상별 인권감수성은 각 에피소드에 대한 평균만을 밝혔을 뿐, 연구 대상별 총점에 대한 평균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에피소드에 나타난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각 연구 대상별 전체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다른 인권감수성의 총점을 기재한 연구의 경우에는 5점 점수로 환산하여 기재하였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공주시 및 경기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의 초·중학생 및 성인들의 인권감 수성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시는 서귀포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며, 이외의 다른 지역의 다양한 대상들에 게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구성요소들의 수준은 <표 13>과 같이 연구 대상 및 연구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연구들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각 연구 대상 및 연구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보편적인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일체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 인권감수성과 선행연구의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대상	연구지역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김선필(2012) ²⁸⁾	고등 학생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2.29
			상황지각	2.36
			결과지각	2.40
			책임지각	2.12
국가인권위원회 (2002)	초등 학생	논산시	인권감수성	1.88
			상황지각	1.86
			결과지각	2.10
			책임지각	1.70
	중학생	논산시	인권감수성	2.46
			상황지각	2.70
			결과지각	2.33
			책임지각	2.34
	고등 학생	공주시	인권감수성	2.45
			상황지각	2.60
			결과지각	2.49
			책임지각	2.29
	대학생	대전광역시 · 공주시	인권감수성	2.59
			상황지각	2.42
			결과지각	2.71
			책임지각	2.63
성인	서울특별시	인권감수성	2.69	
		상황지각	2.64	
		결과지각	2.71	
		책임지각	2.73	
조운정(2006)	고등 학생	경기도	인권감수성	2.26
			상황지각	-
			결과지각	-
			책임지각	-
김덕진(2009)	초등 학생	경상남도 C시	인권감수성	2.60
			상황지각	2.73
			결과지각	2.54
			책임지각	2.54
이상희(2007)	중학생	과천시	인권감수성	3.46
			상황지각	3.38
			결과지각	3.70
			책임지각	3.31
박재숙(2008)	중학생	대구광역시	인권감수성	2.22
			상황지각	2.51
			결과지각	2.04
			책임지각	2.11
기순임(2011)	사회복지사 (성인)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권감수성	2.45
			상황지각	2.35
			결과지각	2.46
			책임지각	2.52

28)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본 연구를 김선필(2012)로 표기하고자 한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1) 계열과 인권감수성

계열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계열과 인권감수성(1)

	P ²⁹⁾
인권감수성	0.000 ^{***}
상황지각	0.000 ^{***}
결과지각	0.000 ^{***}
책임지각	0.000 ^{***}

*** P<.001

인권감수성의 경우,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의 경우,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P값이 모두 0.000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인권감수성 구성요소들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계열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15>와 같다.

<표 15> 계열과 인권감수성(2)

		인문계	전문계
인권감수성	평균	2.57	1.61
상황지각	평균	2.62	1.70
결과지각	평균	2.73	1.59
책임지각	평균	2.36	1.53

인권감수성의 경우, 인문계 학생들의 평균은 2.57이고, 전문계 학생들의 평균은 1.61로 나타나, 인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전문계 학생들의 인권감수성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계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구성요소의 경우, 상황지각을 살펴보면 인문계의 평균은 2.62이고, 전문계의 평

29) P는 유의확률(P-value)을 의미한다.

균은 1.70이다. 결과지각의 경우, 인문계 학생의 평균은 2.73이고, 전문계 학생의 평균은 1.59이다. 책임지각은 인문계 학생의 평균은 2.36이고, 전문계 학생의 평균은 1.53이다. 이처럼 전문계 학생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인문계 학생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지·정서·행동적 영역 모든 면에 대해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한편, 책임지각의 경우는 인문계 학생, 전문계 학생 할 것 없이 모든 학교에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적 노력은 모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과 인권감수성

성별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성별과 인권감수성(1)

	P
인권감수성	0.001***
상황지각	0.030*
결과지각	0.000***
책임지각	0.014*

* P<.05, *** P<.001

인권감수성의 경우,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01로서,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의 경우,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P값이 0.030, 0.000, 0.014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17>과 같다.

<표 17> 성별과 인권감수성(2)

		남자	여자
인권감수성	평균	2.09	2.54
상황지각	평균	2.21	2.54
결과지각	평균	2.10	2.78
책임지각	평균	1.97	2.32

인권감수성의 경우, 남학생들의 평균은 2.09이고, 여학생들의 평균은 2.54로 나타나, 여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남학생의 인권감수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연구들(김도환, 2008; 박봉규, 2007; 이세민, 2009; 조현민, 200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인권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구성요소의 경우, 상황지각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은 2.21, 여학생의 평균은 2.54이다. 결과지각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은 2.10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2.78이다. 책임지각은 남학생의 경우 평균은 1.97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2.32이다. 이처럼 남학생의 수준은 여학생에 비해 모든 요소에서 뒤처지고 있고, 특히 책임지각의 경우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인지·정서·행동적 영역 모두를 집중적으로 다루되,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적과 인권감수성

성적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성적과 인권감수성(1)

	유의확률
인권감수성	0.034*
상황지각	0.005**
결과지각	0.099
책임지각	0.203

* P<.05, ** P<.01

인권감수성의 경우,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34로 나타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의 경우, 세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상황지각의 P값은 0.005로 성적에 따른 상황지각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지각의 P값은 0.099, 책임지각은 0.203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19>와 같다.

<표 19> 성적과 인권감수성(2)

		상	중	하
인권감수성	평균	2.37	2.38	1.90
상황지각	평균	2.49	2.46	1.83

인권감수성의 경우, 성적이 상인 학생의 평균은 2.37이고, 중인 학생의 평균은 2.38이며, 하인 학생의 평균은 1.90이다. 즉,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그보다 낮은 인권감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구성요소의 경우, 상황지각은 성적이 상인 학생의 평균이 2.49이고, 중인 학생의 평균이 2.46, 하인 학생의 평균이 1.83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성적에 따른 인권 감수성의 차이는 상황지각 즉, 인권에 대한 인지적 영역의 차이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인권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위권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는 인권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경험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감수성

	P
인권감수성	0.135
상황지각	0.317
결과지각	0.071
책임지각	0.251

인권교육 경험의 경우, 세 집단(없다, 있다, 모르겠다)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135로 나타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성요소의 경우, 네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상황지각과 책임지각 및 결과지각의 P값은 0.317, 0.251, 0.07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조운정, 2006; 박재숙, 2008)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이상희(2008: 84)와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이 4회 미만인 학생이 92.3%로 나왔다고 보고하는 심태진(2011: 53)의 연구에 따라 추론해본다면, 인권감수성이 인권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단기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의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이상의 ANOVA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 경험과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3. 인권항목별 인권감수성

<표 10>에서 살펴보았듯 인권감수성 검사에 사용되는 에피소드들은 각각 특정 인권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각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다면, 학생들이 각 인권항목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권감수성의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인권교육에 있어 어떤 인권항목에 대한 교육을 특히 강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은 각 인권항목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인권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권이 3.29,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3.25,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가 3.07, 환경권이 2.41,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2.21,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이 2.20,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2.12,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2.01, 사생활권이 1.33,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이 1.07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각 인권항목(에피소드)에 따른 인권감수성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평균 순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감원 대상)	0.00	5.00	2.12	7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김씨의 구속)	0.00	5.00	2.01	8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장애인 학교)	0.00	5.00	2.21	5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자녀교육)	0.00	5.00	3.07	3
사생활권(CCTV)	0.00	5.00	1.33	9
청소년 노동권(아르바이트)	0.00	5.00	3.29	1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진료자 명단)	0.00	5.00	2.20	6
환경권(공장 건립)	0.00	5.00	2.41	4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황판사의 고민)	0.00	5.00	1.07	10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려씨의 임금)	0.000	5.00	3.25	2

이 결과 가운데 특이한 점은 청소년 노동권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 인권항목들이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의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그 내용은 노동에 따른 대가 즉 임금에 대한 권리로서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은 에피소드에 나타난 청소년과 이주노동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인권감수성의 평균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환경권으로부터 최하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이르는 인권항목 분포도 특이할 만하다. 이 인권항목들에 대한 에피소드들 즉, 공장건립(환경권), 장애인 학교(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진료자 명단(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감원 대상(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김씨의 구속(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CCTV(사생활권), 황판사의 고민(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수의 이익을 위

해 소수 또는 개인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인권감수성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에피소드의 내용은 소수 또는 개인에 대한 억압의 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이 결과를 통해, 자신과는 무관한 대상의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가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식이 학생들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³¹⁾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을 인권에 대한 권리성 인식과 인권에 내재된 의무성 인식으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 권리성 점수가 의무성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박봉규(2007: 3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의무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 고등학생들의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소수자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학생들 자신과 동일한 인권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의식하며, 때로는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알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인권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한 자세한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³²⁾

1)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22>와 같이 평균 2.12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2.03이며, 결과지각은 평균 2.29, 책임지각은 평균 2.03으로 나타났다.

30) 환경권→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체포, 구속 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권→구급으로부터의 자유권

31) 한편 이러한 추정은 학생들이 경제적 권리를 중요시하는데 있어,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를 가늠하게 한다. 즉, 러씨의 임금(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인권감수성의 평균점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경제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2) <표18>을 보면 인권교육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을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22>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2.12
		상황지각	2.03
		결과지각	2.29
		책임지각	2.03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1.96
		상황지각	1.97
		결과지각	1.93
		책임지각	2.00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평등권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황지각과 책임지각에 대한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지적·행동적 영역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³³⁾해보면, 서귀포시 고등학생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인권감수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년의 시간 동안 민주화의 성장과 더불어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향상 폭이 미미한 것으로 보았을 때 적극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통한 향상이라기보다는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교는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선행연구 가운데 각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별도로 조사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유일하였고, 그 연구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의 상대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계열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경우,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00으로서,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모두 0.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경우,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01로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0, 결과지각은 0.003, 책임지각은 0.652로 나타나 책임지각을 제외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성적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경우,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 차이에 대한 P값은 0.077로서,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61, 결과지각은 0.145, 책임지각은 0.710으로 나타나,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학생특성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00***
	상황지각	0.001***
	결과지각	0.001***
	책임지각	0.001***
성별	인권감수성	0.001***
	상황지각	0.000***
	결과지각	0.003**
	책임지각	0.652
성적	인권감수성	0.077
	상황지각	0.061
	결과지각	0.145
	책임지각	0.710

** P<.01, *** P<.001

<표 24>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 기술통계이다.

<표 24> 학생특성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인권감수성	평균	2.25	1.24
	상황지각	평균	2.38	1.13
	결과지각	평균	2.62	1.42
	책임지각	평균	2.35	1.17
			남자	여자
성별	인권감수성	평균	1.76	2.57
	상황지각	평균	1.46	2.77
	결과지각	평균	1.85	2.84

우선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 수준이 인문계 학생들의 평균은 2.25이고, 전문계 학생들의 평균은 1.24로 나타나, 인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전문계 학생들의 인권감수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성요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를 통틀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 수준이 남학생의 평균은 1.76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2.57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의 경우도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학생이 불평등한 대우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평등권, 성차별의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학생특성에 따른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등권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은 전문계 학생과 남학생에게 더욱 필요하며, 교육당국은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25>와 같이 평균 2.01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1.84이며, 결과지각은 평균 1.92, 책임지각은 평균 2.27로 나타났다.

<표 25>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2.01
		상황지각	1.84
		결과지각	1.92
		책임지각	2.27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3.20
		상황지각	3.10
		결과지각	3.12
		책임지각	3.38

이상의 결과를 보면, 모든 부분에서 낮은 인권감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인권항목이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김씨의 구속)가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로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렇듯 낮은 인권감수성은 학생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생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이 결과 가운데 특이한 점은 책임지각이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해 낮게 나오는 일반적인 결과와는 달리, 이 경우는 책임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인권교육이 주로 인지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를 다루는 인권교육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권교육은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를 다루는 시간을 특별히 고려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 또한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 인권항목과 관련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공주시 고등학생들 보다 서귀포시 고등학생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귀포시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학생특성별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05**
	상황지각	0.214
	결과지각	0.004**
	책임지각	0.007**
성별	인권감수성	0.528
	상황지각	0.934
	결과지각	0.455
	책임지각	0.479
성적	인권감수성	0.080
	상황지각	0.189
	결과지각	0.118
	책임지각	0.222

** P<.01

우선 계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5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214, 결과지각은 0.004, 책임지각은 0.007로 나타나,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528로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934, 결과지각은 0.455, 책임지각은 0.479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80로서,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이 0.189, 결과지각이 0.118, 책임지각이 0.222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27>과 같다.

<표 27> 학생특성별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인권감수성	평균	2.24	1.41
	결과지각	평균	2.21	1.15
	책임지각	평균	2.54	1.56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인문계 학생들의 평균이 2.24이고, 전문계 학생들의 평균은 1.41로 나타나, 인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성요소 역시 모든 요소를 통틀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평균이 높다. 특히 결과지각은 전문계 학생의 평균이 1.1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전문계 학생의 의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타인의 잘못이 의심스러울 경우 그를 함부로 대해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내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친구에 대한 폭력이 용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교육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문계 학생보다 전문계 학생에게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28>과 같이 평균 2.21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2.37이며, 결과지각은 평균 2.18, 책임지각은 평균 2.09로 나타났다.

<표 28>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2.21
		상황지각	2.37
		결과지각	2.18
		책임지각	2.09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2.39
		상황지각	2.46
		결과지각	2.47
		책임지각	2.25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의 평균값이 낮게 나오고 있고, 책임지각의 값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특히 낮게 나오고 있으므로 인권감수성의 전형적인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책임지각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학생특성별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02**
	상황지각	0.002**
	결과지각	0.007**
	책임지각	0.049*
성별	인권감수성	0.252
	상황지각	0.901
	결과지각	0.060
	책임지각	0.286
성적	인권감수성	0.379
	상황지각	0.042*
	결과지각	0.905
	책임지각	0.859

* P<.05, ** P<.01

우선 계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2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2, 결과지각은 0.007, 책임지각은 0.049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252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901, 결과지각은 0.060, 책임지각은 0.286으로 나타나,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379로서,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42, 결과지각은 0.905, 책임지각은 0.859로 나타나, 상황지각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

의 기술통계는 <표 30>과 같다.

<표 30> 학생특성별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인권감수성	평균	2.47		1.53
상황지각		평균	2.68		1.58	
결과지각		평균	2.46		1.44	
책임지각		평균	2.28		1.58	
			상	중	하	
성적	상황지각	평균	2.51	2.58	1.48	

우선 계열의 경우, 인문계 학생들의 평균은 2.47이고, 전문계 학생들의 평균은 1.53으로 나타나, 인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성요소 역시 모든 요소를 통틀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높은 평균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를 다루는 인권교육은 전문계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성적의 경우, 상황지각은 성적이 상인 학생의 평균은 2.51, 중인 학생의 평균은 2.58, 하인 학생의 평균은 1.48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적이 높을 수록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영역에 대해 학생들이 잘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할 때 인지적 영역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31>과 같이 평균 3.07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3.52, 결과지각은 평균 3.84, 책임지각은 평균 1.85로 나타났다.

<표 31>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3.07
		상황지각	3.52
		결과지각	3.84
		책임지각	1.85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3.13
		상황지각	3.53
		결과지각	4.08
		책임지각	1.77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 점수는 여타의 인권항목들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책임지각의 평균이 1.8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편향되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은 책임지각 즉,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와 공주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요소들에 비해 책임지각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또한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향상은 책임지각의 향상에 달려 있으며, 이는 행동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학생특성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00 ^{***}
	상황지각	0.000 ^{***}
	결과지각	0.000 ^{***}
	책임지각	0.103
성별	인권감수성	0.000 ^{***}
	상황지각	0.002 ^{**}
	결과지각	0.000 ^{***}
	책임지각	0.094
성적	인권감수성	0.229
	상황지각	0.669
	결과지각	0.262
	책임지각	0.454

** P<.01, *** P<.001

우선 계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0으로서,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0, 결과지각은 0.000, 책임지각은 0.103으로 나타나, 책임지각을 제외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0으로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2, 결과지각은 0.000, 책임지각은 0.094로 나타나,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229로서,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669, 결과지각은 0.262, 책임지각은 0.454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33>과 같다.

<표 33> 학생특성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인권감수성	평균	3.41
상황지각		평균	3.88	2.56
결과지각		평균	4.33	2.54
			남자	여자
성별	인권감수성	평균	2.71	3.52
	상황지각	평균	3.10	4.04
	결과지각	평균	3.41	4.37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인문계 학생의 평균이 3.41이고, 전문계 학생의 평균이 2.17로 나타나, 인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훨씬 높았다. 구성요소 또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모두에서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남학생의 평균이 2.71, 여학생의 평균이 3.52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구성요소 또한 모든 요소를 통틀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³⁴⁾ 따라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덧붙여, 계열과 성별에 따른 책임지각의 평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계열 2.01, 1.42, 성별 1.61, 2.16),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지하고 삶 속에서 의식하고 있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열 및 성별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가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그것을 막아설 능력이 없으며, 방관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열과 성별에 상관없이 책임지각 즉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각

34) 남학생의 경우도 상황지각의 평균이 3.10, 결과지각의 평균이 3.41로 나타나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34>와 같이 평균 1.33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1.40, 결과지각은 평균 1.58, 책임지각은 평균 1.01로 나타났다.

<표 34> 사생활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1.33
		상황지각	1.40
		결과지각	1.58
		책임지각	1.01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1.74
		상황지각	1.70
		결과지각	1.97
		책임지각	1.55

이처럼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책임지각의 경우 평균이 1.01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훑쳐보는 것이 인권 침해인 사실조차 모른 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통해 동영상 몰래 찍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들은 이 같은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모든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속히 실시하여 사생활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에 비교해보면, 서귀포시와 공주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둘 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서귀포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귀포시 고등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사생활권에 대한 의식이 위험한 수준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귀포시 교육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학생특성별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266
	상황지각	0.751
	결과지각	0.216
	책임지각	0.297
성별	인권감수성	0.110
	상황지각	0.005**
	결과지각	0.485
	책임지각	0.943
성적	인권감수성	0.133
	상황지각	0.064
	결과지각	0.415
	책임지각	0.527

* P<.05, ** P<.01, *** P<.001

우선 계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266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751, 결과지각은 0.216, 책임지각은 0.297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110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5, 결과지각은 0.485, 책임지각은 0.943으로 나타나, 상황지각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성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 차이에 대한 P값은 0.133으로 나타나,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64, 결과지각은 0.415, 책임지각은 0.527로 나타나,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36>과 같다.

<표 36> 학생특성별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남자	여자
성별	상황지각	평균	1.78	0.93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통계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생활권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이 인문계와 전문계를 구분할 것 없이 모든 학교의 공통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교육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별의 경우, 상황지각은 남학생이 평균 1.78, 여학생이 평균 0.93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이는 여학생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보통의 결과들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여학생의 사생활권의 인지적 영역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호의존은 여성성, 독립성은 남성성으로 분류되며, 여자 아이들의 자아와 도덕성은 관계라는 체계를 통해서 발달한다는 홍숙선(2001: 13; 홍숙기, 2000)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관계 지향적 성향이 강하여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사생활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여학생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6)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37>과 같이 평균 3.29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3.70, 결과지각은 평균 2.91, 책임지각은 평균 3.26으로 나타났다.

<표 37> 청소년 노동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3.29
		상황지각	3.70
		결과지각	2.91
		책임지각	3.26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2.30
		상황지각	3.64
		결과지각	1.13
		책임지각	2.14

이처럼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이다. 한편, 재학생 가운데 아르바이트 유경험자가 27.4%(고용노동부, 2011: 49-50)로 청소년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높아진 진학률(여성가족부, 2011: 261)에 따라,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지적 영역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 교육풍토 속에서 상황지각은 별 차이가 없고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은 향상된 것을 보면, 학교 내에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풀이될 가

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학생특성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00***
	상황지각	0.000***
	결과지각	0.000***
	책임지각	0.000***
성별	인권감수성	0.000***
	상황지각	0.001***
	결과지각	0.000***
	책임지각	0.001***
성적	인권감수성	0.251
	상황지각	0.057
	결과지각	0.694
	책임지각	0.605

*** P<.001

계열의 경우,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역시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모두 0.000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1, 결과지각은 0.000, 책임지각은 0.001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성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251로 나타나,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57, 결과지각은 0.694, 책임지각은 0.605로 나타나,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39>와 같다.

<표 39> 학생특성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인권감수성	평균	3.77	2.02
	상황지각	평균	4.18	2.44
	결과지각	평균	3.42	1.60
	책임지각	평균	3.73	2.02
			남자	여자
성별	인권감수성	평균	2.74	3.98
	상황지각	평균	3.30	4.20
	결과지각	평균	2.13	3.90
	책임지각	평균	2.79	3.84

우선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인문계 학생의 평균이 3.77, 전문계 학생의 평균이 2.02로 나타나고 있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고, 그 수준 역시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호하다. 구성요소 또한 모든 요소에 있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문계 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 모든 면에 있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문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한연숙(2002: 9)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이 인문계 학생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남학생이 평균 2.74, 여학생이 평균 3.98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구성요소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요소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결과지각의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여학생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서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7)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40>과 같이 평균 2.20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1.84, 결과지각은 평균 2.53, 책임지각은 평균 2.22로 나타났다.

<표 40>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2.20
		상황지각	1.84
		결과지각	2.53
		책임지각	2.22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2.27
		상황지각	2.87
		결과지각	2.49
		책임지각	2.25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황지각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책임지각이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보통의 결과와는 달리, 책임지각이 상황지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즉,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서 논했던 바와 같이, 현재의 인권교육이 주로 인지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을 다루는 인권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실시하는 인권교육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을 다루는 시간을 고려하여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와 공주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황지각의 경우 서귀포시 고등학생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인권

항목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서귀포시 교육당구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학생특성별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00***
	상황지각	0.000***
	결과지각	0.000***
	책임지각	0.012*
성별	인권감수성	0.004**
	상황지각	0.021*
	결과지각	0.001***
	책임지각	0.085
성적	인권감수성	0.528
	상황지각	0.131
	결과지각	0.473
	책임지각	0.893

* P<.05, ** P<.01, *** P<.001

우선 계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0.000, 책임지각은 0.012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4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21, 결과지각은 0.001, 책임지각은 0.085로 나타나,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성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528로 나타나,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131, 결과지각은 0.473, 책임지각은 0.893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42>와 같다.

<표 42> 학생특성별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인권감수성	평균	2.54	1.31
	상황지각	평균	2.23	0.83
	결과지각	평균	2.90	1.54
	책임지각	평균	2.48	1.56
			남자	여자
성별	인권감수성	평균	1.84	2.65
	상황지각	평균	1.50	2.27
	결과지각	평균	2.05	3.13

우선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인문계 학생이 2.54, 전문계 학생이 1.31을 보이고 있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구성요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책임지각 모든 요소에 있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의 평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상황지각의 평균이 0.83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교육이 전문계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하며, 나아가 인지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남학생이 1.84, 여학생이 2.65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구성요소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요소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학생의 상황지각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인지적 영역 중심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8)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43>과 같이 평균 2.41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2.38, 결과지각은 평균 2.40, 책임지각은 평균 2.46로 나타났다.

<표 43> 환경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2.41
		상황지각	2.38
		결과지각	2.40
		책임지각	2.46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2.41
		상황지각	2.47
		결과지각	2.42
		책임지각	2.34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와 공주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안에서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대표적 관광도시이다. 반면, 공주시는 자연경관보다는 삼국시대의 백제(百濟)와 관련된 역사도시이다. 따라서 환경권에 대한 의식은 서귀포시가 공주시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일 것이다. 서귀포시의 자연환경은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도시 고등학생의 환경권 의식이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서귀포시 고등학생에 대한 환경권 교육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는 200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10

년 전의 결과이다. 그 동안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 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왔다.³⁵⁾ 그런데 서귀포시 고등 학생의 환경권 의식 수준과 10년 전 공주시 고등학생의 환경권 의식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당국이 자연환경의 대외적인 홍보에만 치중했을 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권 교육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권 의식 수준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연환경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귀포시 교육당국은 환경권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빼어난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시민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학생특성별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98
	상황지각	0.351
	결과지각	0.145
	책임지각	0.088
성별	인권감수성	0.392
	상황지각	0.506
	결과지각	0.599
	책임지각	0.345
성적	인권감수성	0.070
	상황지각	0.047
	결과지각	0.186
	책임지각	0.277

35) 자세한 내용은 '세계자연유산제주' 홈페이지(jejuwnh.jeu.go.kr)을 참조할 것.

우선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98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351, 결과지각은 0.145, 책임지각은 0.088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392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506, 결과지각은 0.599, 책임지각은 0.345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성적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 차이에 대한 P값이 0.070으로 나타나,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요소는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47, 결과지각은 0.186, 책임지각은 0.277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권감수성의 모든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이상의 ANOVA 결과에 따라 학생특성별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권에 대한 인권교육은 학생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9)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45>와 같이 평균 1.07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0.89, 결과지각은 평균 1.29, 책임지각은 평균 1.02로 나타났다.

<표 45>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1.07
		상황지각	0.89
		결과지각	1.29
		책임지각	1.02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1.84
		상황지각	1.48
		결과지각	1.93
		책임지각	2.10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의 모든 부분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을 다루고 있는 이 인권항목이 포함된 에피소드(황판사의 고민)는 전과자에 대한 낙인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 이에 대한 평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낙인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교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주시에 비해 서귀포시 고등학교에서 이 인권항목과 관련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귀포시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학생특성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281
	상황지각	0.886
	결과지각	0.012*
	책임지각	0.937
성별	인권감수성	0.012*
	상황지각	0.002**
	결과지각	0.538
	책임지각	0.039*
성적	인권감수성	0.468
	상황지각	0.926
	결과지각	0.052
	책임지각	0.702

* P<.05, ** P<.01

우선 계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281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886, 결과지각은 0.012, 책임지각은 0.937로 나타나, 결과지각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012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2, 결과지각은 0.538, 책임지각은 0.039로 나타나, 상황지각과 책임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한편, 성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은 0.468로 나타나,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926, 결과지각은 0.052, 책임지각은 0.702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47>과 같다.

<표 47> 학생특성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결과지각	평균	1.51	0.71	
			남자	여자	
성별	인권감수성	평균	1.30	0.78	
	상황지각	평균	1.25	0.45	
	책임지각	평균	1.27	0.71	

우선 계열의 경우, 결과지각은 인문계 학생의 평균이 1.51, 전문계 학생의 평균이 0.71로 나타나, 인문계·전문계 학생 할 것 없이 결과지각의 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히 전문계 학생의 결과지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계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정서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남학생이 1.30, 여학생이 0.78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보통의 결과들과는 달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상황지각은 남학생이 평균 1.25, 여학생이 평균 0.45로 나타나고 있고, 책임지각은 남학생이 평균 1.27, 여학생이 평균 0.71로 나타나고 있어, 상황지각과 책임지각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상황지각 수준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낮는데, 여학생의 경우 관계 중심적 성향이 강하므로 그 관계 속에서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하정희·전미이·손재환(2011: 81)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또래 관계 속에서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여학생에게서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교육은 성별에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조속히 실시하되, 특히 여학생에 대한 교육 특히 인지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0)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표 48>과 같이 평균 3.25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지각은 평균 3.64, 결과지각은 평균 3.07, 책임지각은 평균 3.04로 나타났다.

<표 48>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자(연구 년도)	연구 지역	구분	평균
김선필(2012)	서귀포시	인권감수성	3.25
		상황지각	3.64
		결과지각	3.07
		책임지각	3.04
국가인권위원회(2002: 46)	공주시	인권감수성	3.29
		상황지각	3.54
		결과지각	3.32
		책임지각	3.01

이상의 결과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구성요소의 수준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생특성과 인권감수성

학생특성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학생특성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1)

학생특성		P
계열	인권감수성	0.000***
	상황지각	0.000***
	결과지각	0.000***
	책임지각	0.000***
성별	인권감수성	0.000***
	상황지각	0.009**
	결과지각	0.000***
	책임지각	0.010**
성적	인권감수성	0.572
	상황지각	0.759
	결과지각	0.779
	책임지각	0.474

** P<.01, *** P<.001

우선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인문계, 전문계)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또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모두 0.000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두 집단(남자, 여자)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009, 결과지각은 0.000, 책임지각은 0.010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적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세 집단(상, 중, 하)의 평균 차이에 대한 P값은 0.572로 나타나,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성요소는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P값이 상황지각은 0.759, 결과지각은 0.779, 책임지각은 0.474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소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생특성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기술통계는 <표 50>과 같다.

<표 50> 학생특성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2)

학생특성			인문계	전문계
	계열	인권감수성	평균	3.65
상황지각		평균	4.01	2.67
결과지각		평균	3.50	1.94
책임지각		평균	3.43	2.00
			남자	여자
성별	인권감수성	평균	2.84	3.77
	상황지각	평균	3.32	4.05
	결과지각	평균	2.52	3.76
	책임지각	평균	2.68	3.49

우선 계열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인문계 학생이 3.65, 전문계 학생이 2.21을 보이고 있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고, 그 수준 역시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계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하되 모든 영역을 골고루 교육시켜야 한다.

성별의 경우, 인권감수성은 남학생이 평균 2.84, 여학생이 평균 3.77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구성요소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요소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은 보통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상황지각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남학생에 대해서는 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소결

지금까지 서귀포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학생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그리고 각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권감수성이 낮게 나타

나고 있어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였다. 한편, 책임지각이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동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권감수성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와 비슷한 인권감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계열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문계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였다. 한편, 책임지각의 경우 계열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모든 학교에서 행동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행동적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또한 성적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었는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위권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인권교육 경험은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권교육이 주로 단기적인 교육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으로, 장기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권감수성 검사에 포함된 10개의 인권항목 각각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10개 인권항목의 인권감수성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된 권리 특히 경제적 권리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자신과는 무관한 대상의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소수자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자신과 같은 인권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의식하며, 그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인지·정의·행동적 영역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어서 각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인지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학생 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다루는 인권교육은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들에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였다.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이에 대한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한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의 수준이 낮아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해 보였다.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 인권항목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인권교육은 전문계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었고,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에게는 인지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교육은 행동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모두에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계 학생에게는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중심으로, 남학생에게는 모든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었다.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인권감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현재 학교 내에서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사건들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교육은 매우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계열·성별·성적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모든 학교에서 이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단, 성별에 따른 상황지각의 경우, 여학생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는 인지적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계 학생과 남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이 인권항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교육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였다. 또한 남학생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의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였다.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들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서귀포시 교육당국의 환경권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환경권에 대한 인권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될 필요가 있었다. 덧붙여,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계열과 성별 그리고 성적의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이 인권항목이 학교폭력과 관련성이 깊은데다, 분석 결과 또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인권항목에 대한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전문계 학생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서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상황지각과 책임지각의 평균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관계 중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래관계 속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인권교육을 여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인지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계 학생과 남학생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생들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자 서귀포시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188명의 질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책임지각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행동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학생보다는 하위권 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신과 관련 있는 항목들에 대한 수준은 높게 나왔으나, 자신과 관련 없는 권리를 다루는 항목들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을 넘어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갖출 수 있도록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에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각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사생활권 그리고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등 학교폭력과 관련이 깊은 인권항목의 대다수가 낮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인권항목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환경권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권 교육은 서귀포시 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가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반인권적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너진 학교 내 인권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지각의 수준이 다른 구성요소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행동적 측면에 대한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학생보다는 하위권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특별히 요구된다. 덧붙여,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인권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우선 연구대상을 서귀포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와의 일반화 역시 서귀포시 고등학생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교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권교육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평가 도구의 부재로 인권감수성이란 대체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인권교육 평가를 대신해 인권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평가 도구의 개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분석하여 이를 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할 때 인권교육의 각 영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권의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의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2010.10.05).
- 고용노동부(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서울 : 고용노동부.
-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일부개정 2008. 03. 21.).
- 교황청정의평화평의회(2006). 간추린사회교리,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구수경(2007). 근대성의 구현체로서 학교 : 시간·공간·지식의 구조화,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구정화·송현정·설규주(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조난심·강명숙·설규주(2007).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05).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I),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08).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1413호 일부개정 2012. 03. 21.).
- 국제사면위원회(1996). 인권교육의 기법, 이용교·이희길 역,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기순임(2011).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과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대운(2004).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과의 지역화-제주지역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덕진(2009). 의사소통기술향상구조 학습활동이 초등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 4학년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도환(2008).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범목(2011).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연구-동아시아 인권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범주(2010). 법과 사회-쉬운 법 편안한 생활,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영란(2005).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영로(2008). **중학교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 김지호(201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홍완(2009). **도덕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라미녀(2008). **학교생활규정에 나타난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김포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문용린·곽병선·안경한·한기철(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민법(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45호 시행일 2013.7.1).
- 박봉규(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상준(2003).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서울, pp.115-141.
- 박영진(2006). **현행 도덕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인권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재숙(2008). **중학생의 인권민감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하현(2005). **학교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명지대학교사회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배동욱(2001). **지역중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백동기(2004). **초등학교 호 교육의 지역화 방안**,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2012.01.26).
- 성낙인(2011). **헌법학**, 경기 : 법문사.

- 성태제(2010). **현대교육평가**, 서울 : 학지사.
- 심태진(2011).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서울.
- 연문희·강진령(2006). **학교상담 -21세기의 학생생활지도-**, 경기 : 양서원.
- 오수웅(2010). **현대의 인권연구경향 비판과 대안의 모색**, 정치사상연구, 16, 서울, pp.73-107.
- 오승윤(2011). **고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법과 사회’ 수업을 위한 사례 개발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유네스코(1974).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오름.
- 유엔(196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유엔(1948). **세계인권선언**.
- 유엔(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유엔(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유엔(1994).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1995-2004)**.
- 유엔(1993).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 윤호준(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사회복지정책대학원.
- 이경서(2001). **조사방법론**, 서울 : 학문사.
- 이근관(2002).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인권의 보편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엮음, 서울 : 삼인, pp.56-78.
- 이근호(2006). **두발규제에 관한 학생인권의 한 연구**, 성공회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삼열(2004). **인권사상의 발전과 실천과제, 세계화와 인권 발전**, 서울 : 오름, pp.49-74.
- 이상희(2007).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성호(2009). **교육과정론**, 경기 : 양서원.
- 이세민(2009).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

- 교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수광(2002).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승미(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 2, 서울, pp.103-120.
- 이용교(1998). **한국 인권교육의 현실과 대안**,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자료집, 경기.
- 이주은(2012).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사회」 교과서 탐구활동의 재구성**,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준일(2010). **인권법**, 서울 : 홍문사.
- 이향유(2010). **초등사회과 지역 환경교육의 구상과 프로그램 개발 : 인천지역 사례**, 경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해용 · 이필영(2003). **표본조사입문**, 서울 : 교우사.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7). **제1회 인권교육워크숍 자료집**, 서울.
- 전미숙(2011). **초등 사회과의 인권교육 내용의 분석**, 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욱(2009). **지역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대학원.
- 정인섭 편역(2000). **국제인권조약집**, 서울 : 사람생각.
- 정임순(2009). **가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창숙(2006). **교사와의 친밀도와 학교 부적응 학생과 적응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적응력**,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윤정(2006).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 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 연구 :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현민(2003). **고등학생과 교사가 인식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서울 : 후마니타스.
- 차경수 ·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서울 : 동문사.
- 최현(2008). **인권**, 서울 : 책세상.
- 하정희 · 전미이 · 손재환(2011). **여중생 학교폭력 가담자 특성에 대한 현상학적**

-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9, 서울, pp.69-85.
- 한승덕(2004). *고등학교 학생 인권에 관한 연구-인권보장, 인권의식, 인권침해 실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 한연숙(2002).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의 의식 및 형태에 관한 연구 : 경기 북부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허완중(2011).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저스티스 124, 서울, pp.136-168.
- 홍성훈(2000).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홍숙기(2000). *성격심리(상)*, 서울 : 박영사.
- 홍숙선(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심리상담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홍승수(2010).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Babbie, Earl(2002). *사회조사방법론*, 고성호 외 공역, 서울 : 그린.
- Banks, J.A.(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NY : Longman.
- Bloom, B. S.(Ed.)(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NY : David McKay.
- Brabeck, M. M, Rogers, L. A., Sirin, S., Henderson, J., Benvenuto, M., Ting, K., & Weaver, M.(2000). *A measure to assess ethical sensitivity to instances of racial and gender intolerance in school: The Racial Ethical Sensitivity Test(REST)*. *Ethics & Behavior*, pp. 119-137.
- Ernest, M.(1990). *Developing and testing cases and scoring criteria for assessing geriatric dental ethical sensibility*, Unpublished MSs thesis, MN : Universiti of Minnesota.
- Fleck-Henderson, A.(1994). *Ethical sensitiv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ta Barbara, CA : The Fielding Institute.
- Getz(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N : University of Minnesota.
- Harrow, A. J.(1972). *A Taxonomy of the Psychomotor Domain: A Guide for Developing Behavioral Objectives*. NY : David Mckay.
- Krathwohl, D. R. et al.(1964).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Y : David Mckay.
- Leibowitz, S.(1990). *Measuring change in sensibility to ethical issues in computer 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 : Boston College.
- Lind, R.(1997). *Ethical sensitivity in viewer evaluations of a TV news investigative repor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 pp.535-561.
- Lister, I.(1991).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H. Starkey(E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 Cassel.
- McNeel, S. P.(1994). *College teaching and student moral development*, In J. R. Rest &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ntkowski, M. & Loacker, G.(1985). *Aseessing and validating the outcomes of college*, In P. T. Ewell(Ed.), *Aseessing educational outcomes*, new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search, 47, CA.
- Rest, J. R.(1983). *Morality*. In O. H. Mussen(Series Ed.), J. H. Flavell and E. M. Markma(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Praeger, NY.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Y : Praeger
- Rest, J. R. & Narvaez, D.(Eds.)(1994).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olker, J. M.(1984). *Counselling experience, moral judgement, awareness of consequence and Moral sensitivity in counselling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N : University of Minnesota.

<ABSTRACT>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eogwipo Cit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im, Seon-Pil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eum, Mi-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This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gwipo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find out this relation, the research questions below were set.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result of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The second one is what are differences betwee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studies by other researchers. The third one is what are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depending on characteristic of students. The fourth one is what is the result of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depending on each human rights category is included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chosen 188 persons in the second-year students in five general high schools in Seogwipo City.

This study made analyzed questionnaire. And next analyzed a data from it. The questionnaire made inquiries about variable of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and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analysis tools. The analysis used SPSS 12.0KO for Windows.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like below. Firstly, there seems to be a little low level about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is Specially low level. Secondly, there seems to be similar between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and studies by other researchers. Thirdly, there seems to be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lower tha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s it, boy students's it lower than girl students's it and low graded students's it lower than middle and high graded student's it. Additionally, there seems to be high level about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are related to themselves. But there seems to be low level about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aren't related to themselves.

The suggestions in the study are like below. In the first pla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uman rights education. Because there seems to be low level about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Specially, According to low level about the perceived perception o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education about an action a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e very sensitive about human education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oy students and low graded students are shown meaningful difference depending on characteristic of students. Besides, Students must learn to recognize and respect rights of others and to act along those.

In addition, limits in this study are like below. Firstly, it is necessary to do follow-up research for students of diverse regions and school years. Secondly, many researches about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assessment

tool for students must be accumulat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be proceeded follow-up research about teaching and learning of human rights's cognition, emotion and action area.

부 록

<부록 1> 국제인권조약

구분	조약명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아파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최종 의정서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이주노동자의 보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지역적 인권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정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정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정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정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추가정서 -미주인권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정서 -사형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 정인섭(2000)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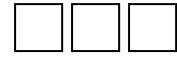
<부록 2> 인권항목 분류표

인권분류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헌법 제10조 인권선언전문 제1조, 제30조, 제31조 A규약전문, B규약 전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유 권적 기본 권	신체의 안전과 자유	신체의 자유 안전할 권리	헌법 제12조 제1·2·3·4·5·6·7항, 제13조 제1·3항, 제16조, 제27조 제4항 인권선언문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B규약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정신의 안전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2항, 제21조 제1·2·3·4항 인권선언문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 B규약 제18조, 제19조 제1·2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사생활 안전과 자유	사생활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헌법 제17조, 제18조 인권선언문 제12조, 제16조 B규약 제17조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2·3·4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15조, 제124조 인권선언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B규약 제12조 제1·2·4항, 제13조
	정치 적기 본권	참정권	공직취임권 선거권 국민주권	헌법 제24조, 제25조 인권선언문 제21조 B규약 제25조
	청구 권적 기본 권	청원권		헌법 제26조 제1·2항 인권선언문 제8조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제1·2·3·5항 인권선언문 제9조, 제10조 B규약 제14조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 제1·2항
		손실보상청구권		헌법 제23조 제3항 B규약 제14조 제6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헌법 제30조 인권선언문 제8조
사 회 적 경 제 적 문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2·3항, 제32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인권선언문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6조 A규약 제2조 제2항, 제3조, 제7조 a·c, 제10조 제3항 B규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3조 제2·3·4항, 제24조 제1항, 제26·27항	
	사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	

화 적 권 리	권 적 기 본 권		인권선언문 제25조 A규약 제11조	
		사회보 장수급 권	사회보장 사회복지 재해예방 보건권	헌법 제34조 제2·3·4·5·6항, 제36조 제2·3항 인권선언문 제22조 A규약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헌법 제31조 제1·2·3·4·5·6항 인권선언문 제26조 A규약 제13조 제1·2·3·4항, 제14조
		노동 기본권	최저임금제 정당임금보장	헌법 제33조 제1·2·3항 인권선언문 제23조, 제24조 A규약 제6조 제1·2항, 제7조 a·b·c·d, 제10조 제2항
		환경권	환경보전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헌법 제35조 제1·3항, 제25조

* 오승윤(2011: 26-27)이 분류한 표를 일부 수정함

인권감수성 검사지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인권감수성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검사지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제시됩니다. 여러분은 각 주장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한 문항도 빠지지 말고 평상시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좋은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이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염 미 경
연구자 김 선 필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1. 현재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인문계 2) 전문계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4. 현재 귀하의 성적은 학급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1) 상 2) 중 3) 하

5. 귀하는 인권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3) 모르겠다.

다음의 검사지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인권감수성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검사지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제시됩니다. 여러분은 각 주장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원 대상

정숙씨는 S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5년전 OO주식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제품 디자인실에서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사내에서 만난 동료직원과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정숙씨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5~600명의 사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며칠 후, 상사는 정숙씨를 자리로 부른 후 현재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남자 사원보다는 정숙씨처럼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직을 권한다. 상사와의 면담 후 자리로 돌아온 정숙씨는 고민에 빠진다.

1) 위의 감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남성가장의 실직은 많은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나.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2) 다음은 위와 같은 감원이 실시될 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남성 가장의 실직을 막아서 가정경제의 충격이 덜 심할 것이다.					
나.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직원이 일할 권리와 자기실현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3) 다음은 고민에 빠진 정숙씨가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정숙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회사 경영난상 어쩔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 퇴직금으로 새 일을 시작한다.					
나.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리한 감원 원칙에 항의한다.					

2. 김씨의 구속

밤늦게 귀가하던 한 남자가 괴한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범인은 얼굴에 복면을 한데다가 뚜렷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한 목격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범인으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신고를 못했는데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와 체격과 용모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붙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체포하여 구속해놓고 자세한 정황을 조사해보려고 한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일단 목격자의 말을 믿고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여 구속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나. 확실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범인일지도 모르는 김씨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다.					
나. 확실한 증거없이 체포, 구속함으로써 김씨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치기 전에 일단 체포하여 구속한다.					
나. 좀 더 정황을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한다.					

3. 장애인 학교

최근에 부녀회장인 소지원씨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자폐아 학교로 인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일반 학부 모들이 이 동네로 이사오기를 꺼려하여 땅값과 집값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자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다. 어떤 주민은 당장 시위를 하러 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 위 사건을 지켜본 이웃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지역 주민들 다수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나.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나.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자는 대다수의 결정에 따른다.					
나.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찬성한다.					

4. 자녀교육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생님은 어느 날 공부방에 들어오는 지혜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다. 지혜의 머리 모양이 사내아이처럼 짧아졌을 뿐 아니라 고르게 다듬어지지 않고 까치둥지와 같이 아무렇게나 가위질해져 있었다. 자세한 정황을 알아보니 지혜 부모님께서 딸의 교육상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었다. 지혜 부모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지혜가 공부는 안하고 매일 못된 친구들과 밖에 돌아다니며 놀기만 해서, 창피해서 밖에 못 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자녀교육상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나. 부모라도 자녀의 신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지혜는 이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나. 지혜의 가슴에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이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지혜에게 앞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타이른다.					
나. 부모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충고해 준다.					

5. CCTV

서울시 모 동네는 요새 들어 절도, 강도 등의 흉흉한 사건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주민들은 밤길을 다니는 것을 꺼리게 되고 급기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뚝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경비 업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동네 주민들에게 CCTV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동네 전체에 설치해 주겠다고 나섰다. 각 가정에 설치하면 동네의 전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경비 회사에서 감시를 하게 되고 동네의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 전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개인적인 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므로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CCTV를 설치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범죄가 없어져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나. 주민들의 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할 것이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지역 주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편하므로 주민들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개인 생활이 없어지고 행동에 제약이 생기므로 CCTV설치를 반대한다.					

6. 아르바이트

혼자 힘으로 멋있는 신형 모델의 자전거를 사고 싶었던 민석이는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사장님은 아직 어려서 일이 서투르니 한 시간에 천오백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은 사실이 기뻐던 민석이는 방과 후에 바로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으며, 저녁식사는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함께 메뉴 중 가장 싼 햄버거를 먹으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월급날이 되었다. 그런데 민석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대학생 형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 날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1) 민석이의 경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청소년은 단순하고 보조적인 일밖에 할 수 없으므로 적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나. 연령에 관계없이 일한 시간과 일의 양에 적절한 돈을 받아야 한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사장은 적은 돈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이득이 된다.					
나. 민석이는 똑같은 일을 하고서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된다.					

3) 다음은 민석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당신이 민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그냥 주는대로 받는다.					
나. 연령에 상관없이 일한 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7. 진료자 명단

한OO씨는 시립 정신병원의 병원장이다. 얼마 전 정신질환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는 후로, 한씨는 최근 2년간 정신과 진료를 10회 이상 받았던 진료자 명단을 뽑아 달라는 경찰서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수시 운전면허 적성시험을 보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탁을 받은 한씨는 진료자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진료기록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한씨가 진료자 명단을 통보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교통사고 위험인자를 가려내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나. 정신질환자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진료기록을 통보해준다.					
나.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진료기록을 통보할 수 없다고 대응한다.					

8. 공장 건립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지역은 특별한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지역주민들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전자회사에서 이 도시의 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시에 요청을 하였다. 시장은 공장이 들어서면 막대한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은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건립을 허가해줄까 고민하고 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나. 자연녹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2) 시장이 공장건립을 허가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지역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 쾌적한 환경을 잃게 될 것이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공장건립 추진활동에 적극 참가한다.					
나. 환경과피 문제를 홍보하여 공장건립을 저지한다.					

9. 황판사의 고민

김씨는 지금까지의 형기합계가 5년이 넘는 절도 전과5범으로 최근에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그런데 김씨는 동일한 죄로 5번이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김씨가 다시 사회에 나가면 언제 또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교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김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김씨는 징역형을 마쳤지만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김씨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황OO 판사는 김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나.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2) 황판사가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줄어든 것이다.					
나.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금은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황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김씨의 교화를 위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다.					
나. 재범하지 않은 김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10. 러씨의 임금

조선족 노동자인 러OO씨는 한국의 공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러씨가 다니는 공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다. 다행히 공장 주인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러씨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다른 노동자들은 러씨에게는 임금을 배당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러씨의 처지를 고려하여 러씨에게도 임금을 준다면 러씨에게 배당한 돈만큼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가.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 러씨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위 사건에서 러씨에게 임금을 배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다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했지만 똑같은 대가를 받지 못해 억울할 것이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러씨와 함께 일한 노동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러씨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